

의안  
번호

430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3. 19.  
전문위원 강 영 숙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소형준 의원 외 13명

나. 의안번호 : 제430호

다. 제출일자 : 2025. 02. 28.

라. 회부일자 : 2025. 03. 13.

2. 제안이유

-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경로당 회장 등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지원대상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조문 정비와 지원기준 확대(안 제7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3. 06. ~ 2025. 03. 12.

○ 의 견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개정안은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 지도원을 위촉하여 지역사회내에서 경로당 운영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 성북구 경로당 현황 >

(2025. 2월말 현재)

구분	계	단독	아파트		등록회 원(명)	회장	비 고
			일반	임대			
계	183	64	100	16	5,619	177	※ 설치기준 • 이용인원: 20명 이상 •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 거실 또는 휴게실 20㎡이상
구립	59	59	0	0	1,943	57	
사립	124	5	100	19	3,676	120	

### □ 주요내용

#### ○ 안 제2조(지원대상) 정비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sup>1)</sup>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37조<sup>2)</sup>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기에 지원대상을 법 조문을 반영하여 간결하게 정비함.

#### 1)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2)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 **안 제6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신설**

「노인복지법」 제24조1)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경로당 운영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해촉, 대상 업무를 명시하여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

○ **안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제1항, 정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정비한 것으로, 제1호~제3호는 조문의 형식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였고, 제9호에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1)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 28., 2023. 5.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 및 안내
- 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u>시설운영비</u>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지원 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난방비 4. 경로당 회원 중식에 소요되는 주·부식 <u>비용</u> 5. ~ 8. (생   략) <u>&lt;신   설&gt;</u>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 ----- ----- ----- 1. ----- <u>운영비</u> 2. <u>양곡 및 부식 구입비</u> 3. <u>냉·난방비</u> <u>&lt;삭   제&gt;</u> 5. ~ 8. (현행과 같음) 9. <u>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u>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노인 인구 및 경로당 이용 인원 증가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역봉사지도원을 지역사회내에서 적극 활용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 없이 입법취지와 내용이 적절하여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p><b>&lt; 비용추계 상세내역 &gt;</b></p> <p>1차년도 소요예산 총 104,480천원 (2025년 본예산 기 편성)</p> <p>· 활동비 102,480천원(70천원×8개월×183명), · 위촉장등 홍보비 2,000천원</p> <p>2차년도 소요예산 총 153,720천원 (70천원×12개월×183명)</p>
---